

2026년 지역전시 활성화 <유형① 미술콘텐츠-지역 전시공간 매칭 지원> 미술콘텐츠 제공자 공개 모집

문화체육관광부와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는 우수 미술콘텐츠와 지역 전시공간의 매칭 지원으로 미술콘텐츠 유통 및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<유형① 미술콘텐츠-지역 전시공간 매칭 지원> 사업을 추진합니다. 동 사업에 참여할 미술콘텐츠 제공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,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* 미술콘텐츠 제공자 확정 이후 지역 전시공간 공모 예정

* 2026년 공모 관련 주요 변경사항

* 본 표는 공모 관련 주요 변경사항 일부의 요약분이므로 세부적인 내용은 반드시 하단의 공고문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라며, 공고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단체에 있습니다.

구분	내용	2025년(기존)	2026년(변경)															
미술콘텐츠 제공자	미술콘텐츠비	미술콘텐츠당 최소 3천만원~최대 5천만원 자유 편성	미술콘텐츠당 4·5·6·7천만원 정액 편성															
	매칭 조건	최대 2개의 각기 다른 전시공간과 매칭 가능	최대 4개의 각기 다른 전시공간과 최대 4번까지 매칭 가능															
전시공간	지원자격	-	카페 등 상업시설 지원 불가															
	지원규모	5천만원~1억원 내 자유 선택	5천만원~3억원 내 선택															
	매칭 가능 횟수	최대 2회	최대 4회															
	전시면적 조건	<table border="1"><thead><tr><th>전시공간 면적</th><th>매칭 가능 미술콘텐츠 규모</th></tr></thead><tbody><tr><td>50평 이상</td><td>3,000만원 이상~4,800만원 이하</td></tr><tr><td>50평 초과~100평 미만</td><td>4,800만원 초과~ 5,000만원 이하</td></tr></tbody></table>	전시공간 면적	매칭 가능 미술콘텐츠 규모	50평 이상	3,000만원 이상~4,800만원 이하	50평 초과~100평 미만	4,800만원 초과~ 5,000만원 이하	<table border="1"><thead><tr><th>전시공간 면적</th><th>매칭 가능 미술콘텐츠 규모</th></tr></thead><tbody><tr><td>최소 50평(165㎡) 이상</td><td>4,000만원</td></tr><tr><td>최소 80평(264㎡) 이상</td><td>5,000만원</td></tr><tr><td>최소 100평(330㎡) 이상</td><td>6,000만원</td></tr><tr><td>최소 150평(495㎡) 이상</td><td>7,000만원</td></tr></tbody></table>	전시공간 면적	매칭 가능 미술콘텐츠 규모	최소 50평(165㎡) 이상	4,000만원	최소 80평(264㎡) 이상	5,000만원	최소 100평(330㎡) 이상	6,000만원	최소 150평(495㎡) 이상
전시공간 면적	매칭 가능 미술콘텐츠 규모																	
50평 이상	3,000만원 이상~4,800만원 이하																	
50평 초과~100평 미만	4,800만원 초과~ 5,000만원 이하																	
전시공간 면적	매칭 가능 미술콘텐츠 규모																	
최소 50평(165㎡) 이상	4,000만원																	
최소 80평(264㎡) 이상	5,000만원																	
최소 100평(330㎡) 이상	6,000만원																	
최소 150평(495㎡) 이상	7,000만원																	

I 사업소개

- (공모명) 26년 지역전시 활성화 <유형① 미술콘텐츠 지역 전시공간 매칭 지원>
- (사업기간) 2026년 4월 ~ 2026년 11월 (총 8개월)
- (지원규모) 미술콘텐츠 1개당 4·5·6·7천만원 정액 지원
- (사업대상)
 - 미술콘텐츠 제공자 : 공·사립미술관, 갤러리, 전시기획사 등

구분	역할	필수 조건
미술콘텐츠 제공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미술콘텐츠 제공- 전시 기획·설치·철수- 부대프로그램 운영- 전시 홍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(필수) 미술콘텐츠 전시 기획·설치·철수- (필수) 4·5·6·7천만원(정액) 규모 기개최 미술콘텐츠 제공- (필수) 총괄기획자 선임- (필수) 미술콘텐츠비 전자(세금)계산서 발행- (필수) 전시해설 프로그램 최소 20회 이상 운영- (필수) 용역 결과보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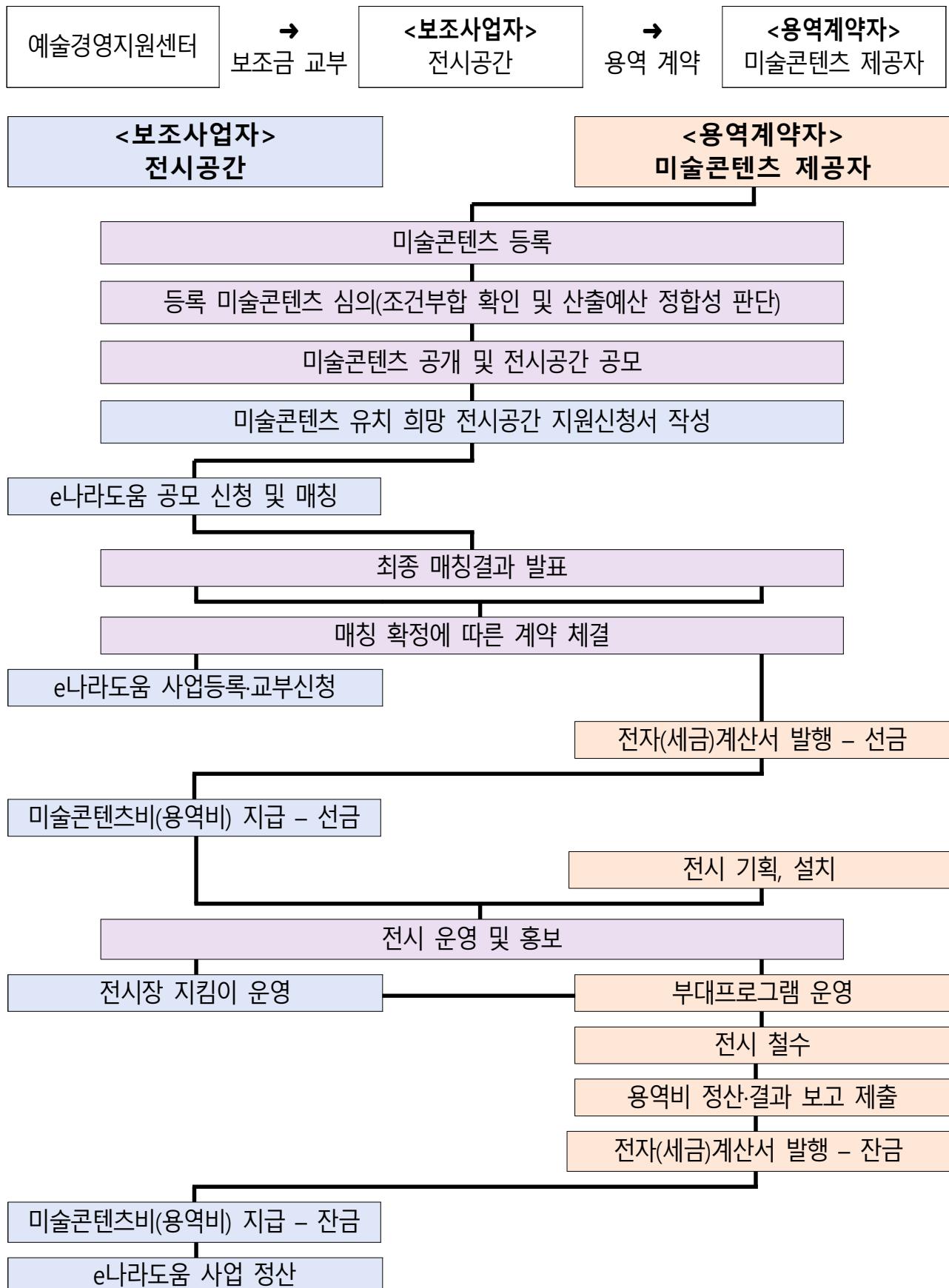
- 전시공간 : 서울 외 지역에 공공·민간 전시공간을 보유한 단체

구분	역할	필수 조건
전시공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e나라도움 보조사업 운영- 공간 제공 및 관리- 전시장 지킴이 운영- 전시 홍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(필수) e나라도움 운용 가능 *사업 신청, 집행, 회계검증, 이월, 정보공시 등- (필수) 총 국고보조금의 10%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부담으로 편성 및 정산- (필수)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보유- (필수) 서울 외 지역에 소재한 실내 전시공간* *면적별 매칭 가능 미술콘텐츠 규모 상이, 확인 필수- (필수) 국고보조금의 80% 이하로 미술콘텐츠비 편성 및 지급- (필수) 설치·철수·휴관일 제외 30일 이상 전시 운영- (권장) 유료 전시

- (사업내용)

- (①단계) 미술콘텐츠 제공자 모집 → 심의·선정 → 등록 미술콘텐츠 공개 → 미술콘텐츠 유치를 희망하는 전시공간 모집 → 매칭 → 경비 지원
- (②단계) 계약체결(미술콘텐츠 제공자+전시공간) → 선금 전자(세금)계산서 발행(미술콘텐츠 제공자) → 선금 용역비 지급(전시공간) → 전시 운영(미술콘텐츠+전시공간) → 용역 결과보고(미술콘텐츠 제공자) → 잔금 전자(세금)계산서 발행(미술콘텐츠 제공자) → 잔금 용역비 지급(전시공간) → 최종정산(전시공간)

▲(참고) 운영구조 *e나라도움 사업신청·집행·정산 등은 전시공간에서 진행



II 미술콘텐츠 제공자 모집 내용

- (모집기간) 공고일 ~ 2025년 12월 18일(목) 17:00
- (모집대상) 미술콘텐츠 제공자

<미술콘텐츠 제공자>

- ▲ 공·사립미술관, 갤러리, 전시기획사 등 미술콘텐츠를 1개 이상 보유한 단체
- ▲ 전자(세금)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단체

<미술콘텐츠 등록 조건>

- ▲ 4·5·6·7천만원(정액) 규모의 미술콘텐츠
- ▲ 최근 3년간(23~25년에 한함) 1번 이상의 개최 이력이 있는 미술콘텐츠
- ▲ 사업기간 내 30일(설치·철수·휴관 제외한 순수개최일) 이상 전시개최가 가능한 미술콘텐츠
- ▲ 미술콘텐츠는 최소 1개에서 최대 4개까지 등록 가능
- ▲ 전시 기획을 위한 총괄기획자 선임 필수
- ▲ 전시해설 프로그램 20회 이상 운영 필수
- ▲ 미술콘텐츠 제공자는 전시공간으로 중복 지원 불가
- ▲ 시각예술(미술) 전시에 한정, 작가(국내·외)·작품(장르) 등 제한 없음

<(참고)매칭> 미술콘텐츠 제공자는 각기 다른 전시공간과 최대 4번까지 매칭 가능

<등록할 수 없는 미술콘텐츠>

- ▲ 레플리카전, 공모전, 수상전, 회원전, 협회전, 교류전, 연례전, 학위 청구전, 아트페어 등 기획의도가 불명확한 전시
- ▲ 지역 순회 전시에 부적합하고, 다수가 공감하기 어려운 전시

<그 외 지원 불가사항>

- ▲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 미술관·박물관
- ▲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 기업(단체)
- ▲ 대표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
- ▲ 한국 사업자등록번호를 소지했으나, 국내에서 활동하지 않는 단체
- ▲ 지원 신청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단체는 선정대상에서 제외
- ▲ 동 사업으로 보조금, 지방보조금, 중앙문예기금(한국문화예술위원회) 중복 수령 불가
- ▲ 학교(초, 중, 고교 및 대학교) 재학생으로 구성된 단체(동아리)
- ▲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
- ▲ 법인·단체 또는 대표자가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일으킨 경우
- ▲ 기 선정된 지원사업의 정산금 등 센터가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
- ▲ 예술경영지원센터로부터 지원금을 교부받아 당해연도 동시 수행하는 지원사업이 3개 이하임을 확인할 수 없는 자(단, 지원금이 1억원 이하인 지원사업은 제외)
- ▲ 기재부 「보조금법」 제31조의 2(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)에 해당하는 단체
- ▲ 문체부 「국고보조금 관리지침」 제7조 제4항(보조사업자 선정 기준)에 해당하는 단체
- ▲ 「예술인권리보장법」 제13(불공정행위의 금지)로 처벌된 단체 및 개인
- ▲ 「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, 「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7조 제2항 제2호로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(단, 의결과정 관여 없이 단

순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) - 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, 기간 경과 시 제외
 ▲ 성희롱·성폭력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○ (지원내용) 1개 미술콘텐츠당 미술콘텐츠비 4·5·6·7천만원 규모 정액 지원

- * 지원금액은 전시 개최경비 및 일반관리비, 이윤, 부가세 등을 일체 포함함
- * 미술콘텐츠 선정에 탈락하거나 최종 매칭되지 않은 경우, 미술콘텐츠비는 지급되지 않음
- * 미술콘텐츠비는 추후 전시공간과의 매칭 결정 이후 전시공간을 통해 용역비 형태로 지급 예정
- * 매칭이 확정된 기개최 미술콘텐츠는 등록신청서를 기반으로 실제 운영되어야 하며, 코어콘텐츠는 변경이 절대 불가함(부득이한 사유로 일부를 변경해야할 경우(작품 파손 등) 미술콘텐츠의 80%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,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함, 변경 내용이 20%를 초과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)

구분	미술콘텐츠 규모	매칭 가능 전시공간 면적	비고
1구간	4천만 원	최소 50평($165m^2$) 이상	
2구간	5천만 원	최소 80평($264m^2$) 이상	문예회관은 1구간에(50평 이상) 해당하여도 미술콘텐츠비는 5천만 원까지 신청 가능
3구간	6천만 원	최소 100평($330m^2$) 이상	
4구간	7천만 원	최소 150평($495m^2$) 이상	

○ (지원 가능 예산 항목)

<편성 가능 항목>		
목	세목	지원항목(국고보조금)
① 운영비(210)	일반수용비(01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운영인력 사례비 (총괄기획자, 큐레이터 한정) * 산출총액의 15% 초과 편성 불가 • 전문인력 사례비 (작가, 평론가, 강사 등) * 내부인력 지급 불가 • 재료비 (부대프로그램 등)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보험비 (전시장, 행사, 작품, 관람객 등)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임차료 (전시 물품 등) * 공간임차료 편성 불가
	일반용역비(14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행 용역비 (연출, 설치, 철수, 홍보, 도록 등) * 전시공간의 일반용역비와 중복 편성 불가
② 여비(220)	국내여비(01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일식비, 교통비 * 숙박비 편성 불가
③ 일반관리비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타 간접경비 (①+② 합계액의 5% 이내)
④ 이윤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이윤 (①+②+③ 합계액의 8% 이내)
⑤ 부가가치세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①+②+③+④ 합계액의 10% (면세사업자는 부가세 편성 불가)

<지원 불가항목>	
자본적 경비	• 지원 종료 후에도 활용 가능한 자산성 물품 등
업무추진비	• 간담회 등을 위한 식음료비 등
기타	• 전시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비용, 보조금카드 사용제한 업종 등

○ (의무사항)

- 매칭된 지역 전시공간에서 전시 기획·설치·철수 *전시장 지킴이 운영은 전시공간이 진행
- 예술인고용보험 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 계약 시 가입신고
- 언론 등의 홍보 지원을 위한 콘텐츠 제공 등 적극적인 협조
- 사업 관련 홍보물 등에 후원 표기(문체부, 예경 순)
- 전시 종료 후 용역 결과(정산)보고서 제출

III 미술콘텐츠 등록 · 접수

○ (접수기간) 공고일 ~ 2025년 12월 18일(목) 17:00까지

*기한 염수, 해당 기한 이후 접수된 건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

- (접수방법) 이메일 제출, kimth@kric.com * 우편, 방문 접수 불가
- (제출서류)

*기한 염수, 해당 기한 이후 접수된 건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

*필수서류 미제출 시 심의 대상에서 제외

순번	제출서류	형식	비고
1	• 양식 미술콘텐츠 제공 신청서	HWP	필수제출
2	• 사업자등록증 사본	PDF	필수제출
3	• 양식 [붙임1] 기개최 전시 증빙자료	HWP	필수제출
4	• 양식 [붙임2] 사업 책임이행 서약서	PDF	필수제출
5	• 양식 [붙임3] 성희롱·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	PDF	필수제출
6	• 양식 [붙임4] 권리 침해 예방에 관한 서약서	PDF	필수제출
7	• 양식 [붙임5]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	PDF	필수제출
8	• 양식 [붙임6] 지원사업 신청자격 확인 및 확약서	PDF	필수제출

○ (유의사항 - 매칭 조건)

- 미술콘텐츠 제공자는 최대 4개의 각기 다른 전시공간과 최대 4번까지 미술콘텐츠 매칭 가능
(1개의 전시공간과는 1개의 미술콘텐츠만 매칭 가능)
- 전시공간은 최대 4개의 각기 다른 미술콘텐츠 제공자와 최대 4개의 미술콘텐츠 매칭 가능
- 하나의 독립된 전시공간에서는 1개의 미술콘텐츠만 개최 가능(단, 하나의 독립된 전시공간을

파티션으로 구획한 공간은 1개의 공간으로 간주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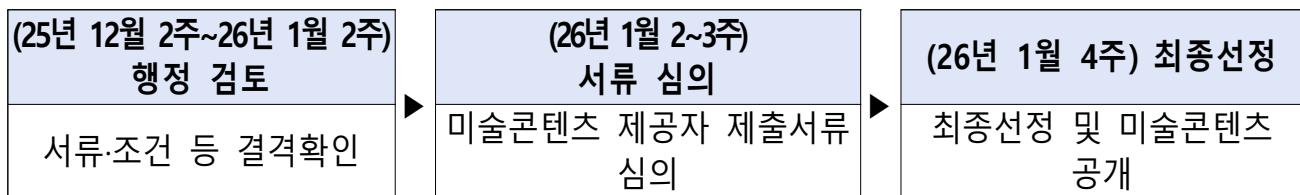
- 두 개의 독립된 전시공간을 보유한 단체는 전시기간 내 각각의 전시공간에서 미술콘텐츠 동시 개최 가능
- 전시공간과 미술콘텐츠 제공자는 중복 지원 불가하며, 한 가지 역할만 가능
- 같은 소재지의(시·군) 전시공간과 미술콘텐츠 제공자는 매칭 불가
- 등록 미술콘텐츠가 기개최된 전시공간에서는 재개최 불가

○ (유의사항)

- 제출서류 누락 및 양식 미준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음
- 미술콘텐츠가 실제와 상이하거나 허위일 경우 사업에서 제외함
- 지역전시 활성화 사업 내 타 공모사업과 중복 선정 불가
- 매칭이 확정된 기개최 미술콘텐츠는 등록신청서를 기반으로 실제 운영되어야 하며, 코어콘텐츠는 변경이 절대 불가함(부득이한 사유로 일부를 변경해야할 경우(작품 파손 등) 미술콘텐츠의 80%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,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함, 변경 내용이 20%를 초과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)
- 미술콘텐츠 제공자가 제출한 예산 편성에 명확한 근거가 없거나 과도하게 편성되었을 경우 심의를 통해 감액될 수 있음
- 미술콘텐츠 제공자와 전시공간은 미술콘텐츠비용 외 기타 인적·물적 거래를 할 수 없음
- 최종 선정된 미술콘텐츠는 전시공간 공모를 위해 웹페이지로 제작되며, 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공개 예정임
- 누리집에는 미술콘텐츠 등록 시 제출한 서류 내 기재된 연락처가 공개되며, 이로 인해 전시공간의 매칭 문의가 있을 수 있음
- 공개(선정)된 미술콘텐츠와 매칭을 희망하는 전시공간이 없거나,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해당 사업이 수행되지 않을 수 있음
- 미술콘텐츠 제공자는 사업기간 동안 사업체를 유지하여야 하며, 휴·폐업 시 사업에서 제외함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의무교육 수료 및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
- 제출한 미술콘텐츠는 저작권·특허권·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및 초상권·성명권 등의 권리를 포함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일체의 민·형사상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하며, 문제 발생 시 제외함
- 예술단체의 운영자가 예술인들과 고용 및 용역 계약시 '예술인복지법' 제4조의4에 따른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, '예술인 권리보장법'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불공정계약을 체결하거나, '예술인 권리보장법' 제1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 체결된 계약 내용을 미이행할 경우, 해당 단체는 문체부 지원사업에서 배제되거나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

IV 심의 및 선정

- (심의방법) 행정 검토 및 외부 전문가(5인 내외)에 의한 서류 심의
- (심의일정) 2025년 12월 2주 ~ 2026년 1월 4주



○ (심의지표)

심의지표	비중	내용
사업계획의 구체성·타당성	40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내용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- 미술향유 확산을 위한 홍보 및 관람객 모객 계획의 충실성 - 안전사고 예방,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책 매뉴얼 등 관리 계획의 구체성
신청주체 역량	30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청주체 및 총괄기획자의 활동 이력 등 전문성 - 최근 3년 이내 전시실적 및 예술현장 기여도
사업 기대효과	30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내용의 성과 기대도 및 파급효과 - 사업의 주제, 작품·작가 등의 시의성

V

문의처

○ (사업문의)

- (이메일) kimth@kric.com
- (전화) 02-6009-2750

* 문의 가능시간 : 평일(월~금) 10시~17시 *점심시간(12시 30분~1시 30분) 제외

참고

공모요강 개념별 정의 *신청서 작성 전 필독

• (미술콘텐츠)

- 장르 무관 시각예술 작품으로 구성된 콘텐츠이며, 공고일 기준 최근 3년(23-25년에 한함) 이내 기개최된 전시이어야 함
- 미술콘텐츠 제외사항으로는 레플리카전, 공모전, 수상전, 회원전, 협회전, 교류전, 연례전, 학위 청구전, 아트페어 등과 지역 순회전시에 부적합하거나 선정적인 전시 등 다수가 공감하기 어려운 전시 등이 있음

• (전시공간)

- 전시공간은 실내를 기준으로 함
- 공간은 최소 50평(약 165m²)이어야 함
- 신청단체가 서울 외 지역에 보유하거나 위탁 운영 중인 공공·민간 전시공간(공·사립 미술관, 문예회관 등)이 가능함(단, 증빙서류 제출 필수)
- 카페 등 상업시설 지원 불가
- 로비, 복도 등의 공간 및 그 외 미술콘텐츠의 운송·파손·보안 등이 우려되는 공간 등은 전시공간으로 지원이 불가함
- 전시장소는 서울 및 매칭을 희망하는 미술콘텐츠 제공자의 소재지(시·군 기준) 외 지역에서 개최 가능함
- 전시공간은 미술콘텐츠 제공자와 매칭 이후, 최종 확정된 미술콘텐츠비를 미술콘텐츠 제공자에게 용역비로 지급하여야 하며, 이에 따라 미술콘텐츠 제공자는 추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

• 전시공간 면적별로 매칭 가능한 미술콘텐츠 규모가 상이함

전시공간 면적		매칭 가능 미술콘텐츠 규모	비고
1구간	최소 50평(165m ²) 이상	40,000,000원	*문예회관은 1구간에(50평 이상) 해당하여도, 미술
2구간	최소 80평(264m ²) 이상	50,000,000원	콘텐츠비는 5천만 원까지 신청 가능
3구간	최소 100평(330m ²) 이상	60,000,000원	
4구간	최소 150평(495m ²) 이상	70,000,000원	

• (매칭)

- 선정된 미술콘텐츠의 유치를 희망하는 전시공간이 매칭신청서를 제출하면 미술콘텐츠 제공자의 의사에 따라 최종 매칭을 결정함
- e나라도움, 자부담금, 미술콘텐츠비 지급 등 행정 전반은 전시공간이 진행 및 부담 하며, 전시 및 부대 프로그램 기획·운영 등은 미술콘텐츠 제공자가 진행함
- **전시공간 제공자는 최대 4개의 각기 다른 미술콘텐츠 제공자와 최대 4개의 미술콘텐츠 매칭 가능(*단, 미술콘텐츠를 2~4개 매칭할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총 국고보조금은 3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)**
- **미술콘텐츠 제공자는 최대 4개의 각기 다른 전시공간과 최대 4번까지 미술콘텐츠 매칭 가능(1개의 전시공간과는 1개의 미술콘텐츠만 매칭 가능)**
- 전시공간과 협의가 완료되었다고 하여 최종 매칭이 확정된 것은 아님
- 매칭이 확정된 기개최 미술콘텐츠는 등록신청서를 기반으로 실제 운영되어야 하며,

코어콘텐츠는 변경이 절대 불가함(부득이한 사유로 일부를 변경해야할 경우(작품 파손 등) 미술콘텐츠의 80%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,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함, 변경 내용이 20%를 초과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)

- **(전시 운영기간)**

- 설치·철수·휴관일 등을 제외하고, 주말을 포함하여 연속 30일 이상 운영 필수임

- **(전시장 지킴이)**

- 전시공간은 전시 개최기간 동안 전시장 지킴이를 배치하여야 하며, 내부인력을 사용할 경우 인건비 지급은 불가함(외부인력 고용 시에만 지급 가능함)

- **(자부담금)**

- 전시공간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e나라도움 시스템에 등록하여 운용해야 함

- 총 국고보조금의 10%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성 자부담으로 편성하여야 하며, 중간 정산 시 자부담금을 전액 소진 상태여야만 2차 교부가 가능함